

제 766 호
1980. 4. 1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편집: 문화공보관 심 계 섭
전화 75-7834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예

제 1414 호: 서울특별시 원정·구청공무원 교육원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
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1850 호: 서울특별시 지방잡 급직원규칙중개정규칙..... 5

◎ 고 시

제 11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인가..... 16

◎ 공 고

제 10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완료공고..... 16

<이면 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04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광고.....	17
제 106 호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사완료.....	18

◎ 예 규

제 391 호 :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중개정규정.....	19
-----------	---------------------------	----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경 상 천 인

1980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414 호

서울특별시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구청, 공무원교육원 등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의 '가. 일반회계'의 공무원 정원표들 별지와 같이 한다.

우 치

이 조례는 1980.4.1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

가. 일반회계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2급장류	3	행정직 2, 행정 및 시설직 1
3급장류	2	행정직 2
3급장류	198	행정직 133, 행정 및 기계직 1, 행정 및 전기직 1, 행정 및 화공직 2, 행정 및 수역직 1, 행정 및 토목직 3, 행정 토목 및 건축직 1, 행정 및 지적직 1, 기계 및 전기직 3, 전기직 1, 화공직 1, 화공 및 보건직 2, 화공 및 토목직 1, 화공 및 건축직 1, 농림직 3, 농림 및 토목직 1, 농림 및 건축직 1, 축산직 1, 축산 및 수의직 1, 의무 및 약무직 1, 의무 및 간호직 1, 보건직 1, 토목직 16, 토목 및 건축직 7, 토목 및 지적직 2, 건축직 8, 지적직 2, 통신직 1.
4급장류	366	행정직 228, 기계 및 전기직 28, 섬유직 1, 화공 및 보건직 13, 농림·축산 및 수의직 14, 약무직 2, 간호직 1, 수산직 1, 토목 및 건축직 68, 지적직 7, 통신 및 전송직 8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4 급 율 류	481	행정직 289, 기계 및 전기직 29, 화공 및 보전직 10, 농림·축산 및 수의직 10, 약무직 4, 간호직 2, 수산직 1, 로목 및 건축직 124, 지적직 10, 통신 및 전송직 2
5 급 갑 류	27	행정직 17, 로목 및 건축직 7, 지적직 2, 통신원 1
5 급 율 류	7	행정직 6, 건축직 1
고 용 원	576	타자원 82, 필생 1, 제도사 5, 목공 2, 수위장 1, 수위 25, 난방공 1, 운전원 140, 민원보조원 12, 전화교환원 18, 수리공 2, 전공 14, 통신원 3, 사진사 8, 기계공 6, 사육원 1, 대장정리원 70, 의무원 1, 경비원 9, 감시원 11, 교도원 3, 청부 30, 전달부 1, 매표원 130
별 정 직	9	2 급 율 류 상당 1, 3 급 갑 류 상당 1, 3 급 율 류 상당 5, 4 급 갑 류 상당 2
소 방 직	54	지방소방정감 1, 지방소방감 3, 지방소방명 9, 지방소방위 8, 지방소방장 8, 지방소방고 10, 지방소방사 15
계	1,723	

(별표 2) 서울특별시 구청 지방공무원 정원표

가. 일반회계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3 급 갑 류	60	행정직 34, 행정 및 토목직 9, 행정·로목 및 건축직 17
3 급 율 류	298	행정직 238, 행정 및 토목직 17, 행정, 화공 및 보전직 5, 행정 및 농림직 13, 토목직 8, 건축직 17
4 급 갑 류	873	행정직 685, 행정·화공 및 보전직 23, 농림직 31, 축산직 2, 보전직 19, 로목 및 건축직 88, 지적직 25
4 급 율 류	1,087	행정직 775, 기계 및 전기직 16, 화공직 12, 농림직 34, 축산 및 수의직 10, 보전직 35, 토목 및 건축직 177, 지적직 28
5 급 갑 류	1,540	행정직 1,158, 기계 및 전기직 25, 화공직 21, 농림직 43, 축산 및 수의직 8, 보전직 34, 간호직 1, 로목 및 건축직 190, 지적직 60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부
5 급 을 류	1,534	행정직 1,198 , 기계 및 전기직 11 , 화공직 1 , 농림직 18 , 축산 및 수의직 7 , 보건직 21 , 토목 및 건축직 211 , 지적직 67
고 용 원	1,039	타자원 188 , 재도사 2 , 수의장 17 , 수위 11 , 운전원 230 , 민원보조원 34 , 전화교환원 51 , 전공 85 , 사진사 3 , 기계공 25 , 대장정리원 51 , 의무원 13 , 원정 35 , 경비원 6 , 감시원 202 , 청부 72 , 전달부 17 , 수로원 17 , 노인정관리인 10
계	6,431	

규 칙

서울특별시 지방잡급직원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1980년 4월 1일

◎ 서울특별시 규칙제 1850 호

서울특별시 지방잡급직원
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지방 잡급직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 (별표 2) 중 '가. 잡급직원 직종별 정원표'와 '나. 기관별 정원표' 중 '(1) 본청' , '(2) 구' 및 '(16) 특별외재(1)' 정원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7층 '3 갑' '3 을' '4 갑' '4 을' '5 갑' '5 을' 을 각각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0. 4.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6 중등 사관 29명은 80. 7. 1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 종 살				
종 별	회 계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계	6,049	4,439	1,610
1	종	279	151	128
2	종	477	466	11
3	종	997	267	730
4	종	642	476	166
5	종	458	397	61
6	종	1,101	1,022	79
7	4 호	10	10	
	5 호	75	75	
	6 호	246	162	84
	7 호	186	186	
	8 호	182	182	
	9 호	101	101	
	소 계	800	716	84
8	2 울 15 호	1	1	
	2 울 5 호	4	4	
	3 울 15 호	9	8	1
	3 울 10 호	21	16	5
	3 울 5 호	44	30	14
	4 갑 9 호	326	262	64
	4 갑 5 호	174	168	6
	기 타	716	455	261
	소 계	1,295	944	351

나. 일반회계										
회계별 종별	계	본청 (경찰 및 소방서 포함)	구	동	도시분야사업소				기타 사업소	
					소계	병원	보건소	기타		
계	4,439	1,147	759	417	1,234	460	623	151	282	
1 종	151	59	23		20	12		8	49	
2 종	466	401	31		1			1	33	
3 종	267	2	31		171	116	51	4	63	
4 종	476	175	155		37	19		18	109	
5 종	397	72	123		107	56		51	95	
6 종	1,022	147	325	417	83	8	68	7	50	
7 종	4 호	10	9		1	1				
	5 호	75	40		22	12		10	13	
	6 호	162	35		102	4	85	13	25	
	7 호	186	25	13	98		79	19	50	
	8 호	182	16		166		166			
	9 호	101			101		101			
	소 계	716	125	13		490	17	431	42	88
8 종	2 읍 15 호	1							1	
	2 읍 5 호	4	1						3	
	3 읍 15 호	8							8	
	3 읍 10 호	16	8						8	
	3 읍 5 호	30	4			4		4	22	
	4 갑 9 호	262	50	34		17	16		1	161
	4 갑 5 호	168	2			19	4		15	147
	기 타	455	101	24		285	212	73		45
소 계	944	166	58		325	232	73	20	395	

다. 특별회계								
회계별 종별	계	주택비	토지구획 정리비	하수 처리장	유료 도로	지하철 운수사업	수도 사업비	
계	1,610	1	6	133	137	43	1,290	
1 종	128			2	32		94	
2 종	11			1			10	
3 종	730						730	
4 종	166		6	1		3	156	
5 종	61			20	17		24	
6 종	79	1		1		9	68	
7 종	4 호							
	5 호							
	6 호	84			84			
	7 호							
	8 호							
	9 호							
8 종	2울15호							
	2울5호							
	3울15호	1			1			
	3울10호	5			5			
	3울5호	14			9		5	
	4잡9호	64			4	6	1	53
	4잡5호	6			5			1
	기 타	261				82	30	149

(별표 2)	
가. 장급직원 직종별 정원	
종	별 정 원
1 종 (279)	제도사(3), 통신기술사(12), 전기기제공(172), 기술교도사(7), 비뎀오기사(3), 기계정비공(23), 사방기술원(3), 보이라공(23), 역청개발원(2), 역청시험원(1), 역청기사(13), 약사보조(8), 수도기계정비공(7), 방송기술사(2)
2 종 (477)	속기사(2), 운전원(84), 시정안내원(2), 관광안내원(2), 교통순시원(365), 운동지도원(4), 마부(7), 주차관리원(1), 민방위훈련반장(10)
3 종 (997)	통계조사보조반장(1), 구호협회간사보조(1), 유수기기제공(16), 유수지전공(12), 새마을복지상담원(2), 운동기구기술사(8), 간호원(156), 보조(2), 사감(1), 의료기사(12), 감사원(1), 수도조절수(416), 수도정비공(314), 유료도로매표원(12), 조명보조(4), 자동차정비보조원(38)
4 종 (642)	보조수(309), 감시원(37), 모니터요원(4), 원예수(16), 세원조사원(96), 안내원(25), 보안등수리공(17), 교환수(9), 타자수(31), 악기관리보조수(1), 승강기안내원(2), 정수처분원(95)
5 종 (458)	청사관리인부(36), 관리인부(20), 보조부(107), 문화재관리인부(1), 대포원(17), 문교지도원(29), 청소원(79), 경비원(67), 수도원(17), 지하도전기관리인부(35), 역사부(25), 양곡단축원(25)
6 종 (1,101)	사환(1,065), 전달부(36)
7 종	4 호 (10) 예비군대대장(1), 업무분석관(7), 기재처리관(1), 불리기사(1)
	5 호 (75) 수석가정상담원(1), 수석부녀상담원(1), 화생방요원(21), 영양사(7), 프로그래머(2), 수의사(2), 부랑아전문지도원(9), 수석아동복지지도원(1), 뇌파기사(2), 짜이프울견정비사(2), 무대기계정비사(1), 무대장치사(1), 통신방송조정주임기사(2), 통신기술사주임(1), 소방방재조정주임기사(1), 무대기계조정기사(1), 자료연구

종	별	직	종	별	정	원
7	6 호 (246)	관(1), 전산처리관(12), 기계처리사(4), 특수교사(4)				
		감사보조원(5), 오퍼레이터(3), 일반가정상담원(8), 약사(17), 도선사(17), 임상병리사(17), 성병전담간호원(17), 가족계획전담지도원(2), 결핵지도간호원(2), 성병전담임상병리사(17), 기술원점프장관리인(1), 기술교도(7), 임상심리사(2), 통신기술반장(2), 위생처리기관조수(16), 위생처리기사조수(90), 전산처리사(4), 기계처리사(3), 천공처리사(1), 전산전기기사(1), 전산기계기사(1), 산소기사(1), 언어치료사(1), 스크아보드조작원(3), 조타수(6), 공해측정장비관리요원(2)				
		7 호 (186)				
		결핵관리요원(26), 윤락여성선도지도원(1), 항공사진사(4), 구호협회간사(1), 도시개발자료요원(2), 일반부녀상담원(20), 사육사(6), 가족계획선임지도원(13), 가족계획센터지도원(40), 아동부러지도원(14), 역청기공반장(5), 천공원(13), 중기정비기능사보(6), 자동차정비원(35)				
		8 호 (182)				
식품위생감시원(8), 가족계획일반지도원(167), 천공원(7)						
9 호 (101)						
동결핵요원(52), 가족계획동요원(39), 가족계획행정요원(10)						
8	2 울 15 호 (1)	파이프울개연주자(1)				
		2 울 5 호 (4)				
		시사편찬수석전문위원(1), 공연기획관(3)				
		3 울 15 호 (9)				
주입기사(4),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조정) 전기발전발전주입기사(3), 보일러냉동조정주입기사(2)						
총	3 울 10 호 (21)	항공사진사주입(1), 전자시스템분석자(2), 판독사주입(5), 학생방주입(1), 위생처리기계기사주입(9), 중기정비기사(2), 영화제작감독(1)				

종	별	직	종	별	정	원
총	3월 5호 (44)	관독사 (3), 위생처리기계기사 (13), 자동기계운전원 (5), 위생처리기관수 (1), 공해측정장비관리기술요원 (4), 중기정비사 (4), 화학기사 (i), 도시가스기계수입 (9), 자동차정비수입 (3), 영화및 V T R 편집요원 (1)				
	4월 9호 (326)	화생방요원 (27), 전기보안담당자 (79), 동물훈련교관 (1), 시사편찬전문위원 (3), 통신기술수입 (6), 인력감사보조원 (1) 보이러수입 (35), 항공판독사 (3), 냉동기사 (2), 위험물취급수입 (1), 고압가스관리기사 (18), 전기수입 (1), 중기정비기능사 (6), 자동차정비사 (5), 중기운전원 (133), 영상조성기사 (2), 해외자료조사원 (1), 작로분석요원 (2),				
	4월 5호 (174)	의료기기수리기사 (4), 중기정비기능사 (8), 수도양수기기기사 (1), 공해측정기사 (20), 자동차부정비사 (43), 도시가스기계공 (40), 중기조정사 (55), 영사기능사 (3),				
	기 타 (716)	강원경찰 (425), 의사 (223), 전공의 (62) 헬기조정사 (3), 헬기정비사 (2),				

나. 기관별정원

기관명 (1) 본 청

종	별	정	원	직	종	원
계		517				
1	종	32		제도사 1, 통신기술사 12, 전기기계공 5, 기술교도사 3, 비디오기사 2, 사방기술원 1, 보이러공 3, 기계정비공 2, 전공 3		
2	종	15		속기사 2, 운전원 9, 시정안내원 2, 관광안내원 2,		
3	종	2		통계조사조반장 1, 구호협회간사보조 1		
4	종	40		보조수 32, 감시원 2, 모니터요원 4, 중기조수 1, 타자원 1,		
5	종	69		청사관리인부 1, 관리인부 9, 보조부 3, 문화재관리인부 1, 분교지도원 29, 청소원 1, 양육단속원 25, (급여전액국고보조)		
6	종	81		사환 81		

종	별	정원	직	종
7	4 호	9	예비군대대장 1, 기계처리관 1, 업무분석관 7,	
	5 호	40	수석기술상담원 1, 수석부녀상담원 1, 화생방요원 21, 통신기술사주임 1, 전산처리관 12, 기계처리사 4,	
	6 호	35	감사보조원 5, 일반가정상담원 8, 가족계획전담지도원 2, 결핵지도간호원 2, 통신기술반장 2, 전산처리사 4, 기계처리사 3, 천공관리자 1, 전산전기기사 1, 전산기계기사 1, 조타수 6,	
	7 호	23	운락여성선도지도원 1, 항공사진사 4, 구호협회간사 1, 도시개발지도원 2, 천공원 13, 일반부녀상담원 2	
	8 호	16	식품위생감시원 8, 가족계획일반지도원 1, 천공원 7	
	9 호			
	2월 15호			
	2월 5호	1	시사편찬수석전문위원 1,	
	3월 15호			
8	3월 10호	8	항공사진사주임 1, 감독사주임 5, 화생방주임 1, 영화제작감독 1	
	3월 5호	4	감독사 3, 영화 및 VTR 편집요원 1,	
	4월 9호	44	화생방요원 27, 시사편찬전문위원 3, 통신기술주임 2, 항공감독사 3, 전기보안담당자 1, 보이러주임 1, 인력감사보조원 1, 영사기사주임 1, 중기조종사 2, 해외자료조사원 1, 자료분석요원 2	
	4월 5호	2	영사기능사 2	
	기 타	96	청원경찰 96	

기관명 (2) 구, 동			직	종
종	별	정원		
계		1,176		
1	총	23	진기기제공 17, 보이라공 6	
2	총	31	운전원 31	
3	총	31	유수지기제공 16, 유수지전공 12, 새마을복지상담원 3	
4	총	155	보조수 20, 원예수 4, 세원조사원 96, 안내원 4, 보안 등수리공 17, 감시원 12, 교환수 2,	
5	총	123	청사관리인부 7, 관리인부 4, 경비원 10, 보조수 6, 청소원 53, 매표원 8, 지하도전기관리인부 35,	
6	총	742	사환 742 (동사환 417 포함)	
7	4 호			
	5 호			
	6 호			
	7 호	13	일반부녀상담원 13	
	8 호			
8	9 호			
	2월 15 호			
	2월 5 호			
	3월 15 호			
	3월 10 호			
	3월 5 호			
	4월 9 호	34	전기보안담당자 22, 보이라수입 8, 교양가스 관리 기사 4	
4월 5 호				
총	기 타	24	청원경찰 24	

기관명 () 산업대학, 공무선교육원, 운동장												
종	별	점	적		종							
			산	업		대	학	공	무	선	교	육
계	58	11	10	47								
1	중	1		전기기제상 1								
2	중	3			운동지도원 3							
3	중	2			운동기구기술사 8							
4	중	5			보조수 3 원예수 2							
5	중	35	청소원 4 청사관리인부 1	청소원 1 경비원 1	경비원 7 청소원 10 매표원 9							
6	중	8	사 환 4	사 환 3	사 환 1							
7	5 호	1		영양사 1								
	6 호											
	7 호											
	8 호											
	9 호											
8	2 줄 15 호											
	2 줄 5 호											
	3 줄 15 호											
	3 줄 10 호											
	3 줄 5 호											
9	4 갑 7 호	3	전기보안담당자 1 보이라주임 1	보이라주임 1 전기보안담당자 1 고압가스관리자사 1	전기보안담당자 1 전기주임기사 1 보이라주임 1 냉동기사 1							
	4 갑 5 호											

기관명 (16) 특별외계(1)				
종 별	정 원	직 종		
		수 도 비		
		본 청	구	사 업 소
계	1,290	30	724	536
1 종	94	제도사 1 보이라공 1	전기기제공 4	수도기제정비공 4 전기기제공 778 기제정비공 6
2 종	10			운전원 10
3 종	730	수도정비공 1	수도조절수 253 수도정비공 269	수도조절수 163 수도정비공 44
4 종	156	보조수 13	보조수 46 징수처분원 95	보조수 2
5 종	24	청사관리인부 1	청사관리인부 6	보조수 15 청사관리인부 2
6 종	68	사환 6	사환 33 전달부 5	사환 14 전달부 10
7 종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8 종	2월 15 호			
	2월 5 호			
	3월 15 호			
	3월 10 호			
	3월 5 호	5		자동기계 운전원 5
	4 갑 9 호	53	전기보안담당 자 2, 보이라 주임 1	전기보안담당자 13 전기보안담당자 5 보이라주임 8, 증기운 원 5, 고압가스 기계기사 9
	4 갑 5 호	1		수도양수기계기사 1
	기 타	149	청원경찰 4	청원경찰 145

고 시

◎ 서울특별시고사제 11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 1. 건설부 고시 제 137 호(77.7.9)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 조와 동법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79.12.10)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 함.
- 3.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0. 4. 1.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의위치: 마포구 도화동 174의 4호~도화동 48의 3호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마포로 확장공사
- 3. 사업규모: 폭= 37m → 50m
연장= 420m

-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인가일 ~ 1980.12.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토지조서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0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완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47 호(78.9.2)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되고 동고시 제 606 호(78.11.15) 및 동고시 제 33 호(79.1.29)로 변경 인가된 도시 계획사업(도로)이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시민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0. 3.

서울특별시장

<p>1. 사업시행지: 강남구 서초동 산 52-7 일대</p> <p>2. 사업종류및명칭: 서울시공무원교육원 진입로공사</p> <p>3.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p> <p>4. 사업기간: 78.9.5-80.3.15</p> <p>5. 사업규모: 폭 15 m 연장 535 m</p> <p>6. 인가권호및일시: 서울시 고시 제 447 호 (78. 9. 2)</p> <p>7. 준공도면: 별첨 (생략)</p>	<p>● 서울특별시공고제 104 호</p> <p>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p> <p>서울특별시 공인할 아래와 같이 신조(개각)사용 승인하고 서울특별 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0. 4. 1. 서울특별시장</p> <p>1. 공 인 명: 별첨 2. 사용개시일: 1980. 4. 1 3. 공인의인명: 별첨</p>
---	--

공 인 의 인 영

인 영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구로구 분입경리관의인	공인명	서울특별시구로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주택비특별회계구로구 수입금출납원확인	공인명	구로구수도사업 특별회계징수관의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구로구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지출원의인	공인명	구로구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물품출납원의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구로구출납명령관의인	공인명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구로구출납공무원의인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06 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사 완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6 호 (78. 9. 16) 로 시행 허가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27-1 의 1 필의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에 대하여 공사까지 완료되었기 도

시계획법 제 85 조 제 1 항,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 12. 10)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 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로 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토	2 류	8m	140m	신림동산 127-3	신림동산 127-3	
"	"	3 류	6m	80m	"	"	
"	"	"	6m	80m	"	"	

구분	등급	유별	목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고
신설	소로	3 류	6m	55m	신림동산 127-3	신림동산 127-3	
"	"	"	6m	60m	"	"	
"	"	"	6m	35m	"	"	

나. 공원 조서

구분	분류	위치	면적	비고
신설	난폭공원	신림동산 127-1,3	10,349.8㎡	

1980. 4. 2.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127-1 의 1 필

나) 사업의종류: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다) 사업시행면적: 25,660.5㎡

라) 사업시행자: 경기도인천시목구부평
동 207 정 익 수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착수: 1978.10.16.

준공: 1980. 3.

바) 준공내용: 별첨측량성과도 및
설계도서와 같음.

* 도면생략 끝

예 규

◎ 서울특별시에규제 391 호

서울특별시채비지관리및
처분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채비지관리 및 처분규
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 조제 2 항제 1 호중 "해약시까지
년 20%"를 "납부일까지년 35%"로한다.
제 14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중
"년 2 할"을 "년 3 할 5 분"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0.4.1.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규정 시행이전에 기하
내각한 채비지에 대하여는중전의규정에 의한다.